

#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의 활동정보

조 미 영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

## I. 서 론

1991년 3월에 개최된 '식품규격, 식품중의 화학물질, 식품교역에 대한 FAO/WHO 회의(FAO/WHO Conference on Food Standards, Chemicals in Food and Food Trade)'에서는 식품의 교역을 원활화하고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국제적 상호인증을 개발하며 각국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분과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1991년 7월에 개최된 제19차 CODEX 총회(1991. 7. 1~10)의 승인에 따라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는 설립되었고 1992년에 제 1차 회의(1992. 9. 21~25)를 개최한 이래로 현재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의장국은 호주이다.

금년에 개최된 제5차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Fif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는 1997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호주정부의 초청으로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호주 검역검사국(Australia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의 개발평가과(Development and Evaluation Division)의

과장인 Digby Gascoine씨가 주재하였고 47개국 대표와 8개의 국제기구, 1개국의 참관인을 포함하여 총 201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희주 서기관(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 식품진흥과), 조미영 연구위원(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 신성균 책임연구원(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강대진 수의주사(농림부 국립동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의 총 4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CCFICS)의 활동을 요약하고 제5차 회의시 토의되었던 논의내용, 결정사항과 결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각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지금까지 작업내역

당분과위원회는 현재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원칙(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CAC/GL 20~1995)' 및 '식품관리상 비상사태시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Control

Emergency Situations ;CAC/GL 19~1995)’가 8단계로 21차 총회(1995. 7. 3~8)에서 채택되어 CODEX 지침서로 승인되었고 ‘CODEX 규격의 검사 및 인증관련 규정에 대한 일반원칙 선언’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4차 당분과위원회(1996. 2. 19~23)에서 토의되었던 회의의제중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서(안)(Draft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on Rejections of Imported Food)’와 제5차 당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식품의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안)(Draft 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도 8단계로 채택되어 제22차 총회(1997. 6. 23~28)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에 있는데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작업이 종료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으며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원칙(CAC/GL 20~1995)

본 원칙은 식품의 검사 및 인증제도를 설정하거나 적용할 때 필요한 기본 원칙을 설립한 문서로서 목적에의 적합성, 위해평가, 비차별성, 효율성, 조화, 동등성, 투명성, 특별차등대우, 관리검사과정, 인증의 유효성의 10가지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해평가(risk assessment)란 식품에 존재하는 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물질, 독소 또는 병인성 생물에 의해 야기되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의 평가작업으로 가능하다면 위해평가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화(harmonization)의 원칙은 회원국은 검사 및 인증제도의 기본요소로 CODEX 국제규격, 권고, 지침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동등성(equivalence)이란 모든 국가는 서로 다른 검사 및 인증제도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의 증명의

의무는 수출국에 있다.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원칙 및 운영상황을 소비자 및 기타 이해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입국은 현행 규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변경시 공표하며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입국은 수출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 식품이 수입국 관련 규제사항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근거를 빠른 시일내에 수출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란 수입국은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 인증의 유효성(certification validity)이란 식품의 수출을 인증하는 나라나 수출인증서에 의존하는 수입국은 인증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한 원칙이 CODEX 지침서로 승인됨에 따라 모든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는 상기한 원칙에 따라 설정되고 평가 및 감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원칙 각각에 대한 명료하며 실제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국내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하여 10가지 원칙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식품관리상 비상사태시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서(CAC/GL 19~1995)

본 문서는 수출국(수입국)의 식품관리행 정당국은 비상사태 발생시 수입국 또는 도착지의 관련 당국(수출국)에 전자통신을 사용하여 즉시 통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다룬 것으로 여기에서 “식품관리상 비상사태(food control emergency situations)”란 그 식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확히 밝혀진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관리상 비상사태시 정보교환을 위하여 기본 서식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건강위해요인의 내역, 관련 식품의 설명, 취하여진 조치,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한 지침서는 수출(입)국의 비상사태 시 수입(출)국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할 때 주요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영국에서 발생된 광우병이나 호주의 탄저병, 대만의 구제역 등 앞으로 비상사태 발생상황에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라고 생각된다.

### 3. CODEX 규격의 검사 및 인증관련 규정에 대한 일반원칙 선언

검사 및 인증제도 조화측면에서 현행 CODEX 규격 또는 규범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일반원칙 선언으로 하자는 제3차 당분과회의의 논의결과가 21차 총회에서 채택되면서 그 내용이 CODEX 규정집 J항 “CODEX 분과위원회 간의 관계(Relations between Codex Committees, p. 112)” 5번째 문단으로 삽입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과제 분과위원회와 식품별 분과위원회는 검사 및 인증에 대한 규정 및 또는 권고를 개발할 때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한 원칙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현재 있는 규격, 지침서 및 규범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개별 분과위원회의 책임하에 적절히 개정하여야 한다. 본 선언은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일반원칙을 각 규격에 적용을 강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이 교역상 원활화를 제한하는 규격이라면 그 규격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12차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에서도 WTO의 SPS 및 TBT 협정하에서 CODEX 권고기준의 지위를 논의하면서 CODEX 규격 및 기준, 지침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22차 총회(1997. 7. 23~28)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CODEX 규격 및 기준을 재검토할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규격기준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4. 수입식품 부적합처리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서(안)(ALINORM 97/30, Appendix 2)

본 지침서는 수입국의 부적합처리에 대하여 조직적인 정보교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통관이 거부될 때 수입자에게 언제나 그 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업자에게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수출국의 식품관련당국에게는 다음의 경우에 부적합 처리정보를 제공한다. 첫째로는 수출국에 식품안전성 및 국민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허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심각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수출국의 식품관리당국에 즉시 빠른 통신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서식(안)이 있는데 그 서식에는 관련 식품에 대한 내용, 수입관련 사항, 부적합처리 결정내역 및 부적합처리 사유와 취하여진 조치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지침서는 22차 총회에서 8단계로 검토될 것이나 CODEX 지침서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총신고건수는 1996년에 139,211건으로 그중 부적합율은 0.71%에 임하고 있다. 수입식품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부적합에 대한 자료와 사항은 일괄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차기 회의에서 '식품의 부적합처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수출국에게 시료채취, 분석방법 및 검사 실험실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요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료채취와 분석방법의 위해에 근거한 제도 확보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 검사기관과 각 검역소의 정도관리를 위한 정책마련과 검사원의 교육 및 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

금번 제5차 당분과위원회에서의 회의의 제는 표 1과 같으며 제 5차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의제별 세부 논의내용과 결정사항 및 그 의미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5차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  
 당분과위원회 회의의제

의제 1	개회
의제 2	의제 채택
의제 3	CODEX 타분과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
의제 4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안)(7단계)
의제 5	전자문서제도를 통한 수출입 인증(초안)(4단계)
의제 6	식품의 검사 및 인증의 공적제도에서 품질보증제도, 특히 ISO 9000계열 규격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서(초안)(4단계)
의제 7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협정개발을 위한 지침서(초안)(4단계)
의제 8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원칙에서 "또는 오염물질의 위해" 문구삭제
의제 9	일반적인 공적인증서 서식에 관한 지침 및 기준
의제 10	수입식품 관리제도 지침서
의제 11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의제 12	차기 회의날짜 및 장소
의제 13	보고서 채택

#### 1.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안)(8 단계)(의제 4)

본 지침서는 식품의 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검사 및 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동등성 원칙의 적용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회원국에서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를 개발할 때 필요한 사항과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검사 및 인증제도의 동등성을 승인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위해분석, 품질보증, 동등성, 검사 및 인증제도 기반구조, 인증제도, 국가의 검사 및 인증기관과 공적인정의 능력, 검사 및 인증제도의 평가 및 증명, 투명성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는 일관되고 투명한 위해분석이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자원은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단계에서 국민건강상 발생가능한 위험에 초점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한 위해분석중점관리기준원칙을 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체에서 품질보증의 자율적인 이용으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을 장려하고 있고 품질보증방법을 이용하는 공적 검사 및 인증제도는 회사관리방법에 적절한지를 검토되어야 하고 정부는 공적검사 및 인증이 식품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를 보증하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검사 및 인증의 동등성 승인은 수출국에서 식품 검사 및 인증에 관하여 수입국과 동등한 적절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성 부분에서 정부에서 승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로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식품에서 다른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위해중심의 제도라는 것과 둘째로는 관리방법이 다르지만 동등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수입식품 및 국내 생산 식품 관리는 동일한 보호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제도인 검사 및 인증제도는 제3자에 의하여 평가를 받거나 자가평가를 통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국은 위해분석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수출국의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수출국 협정을 검토할 수 있고 정기적인 평가 검토를 교역개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에 대하여 제5차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

“countries”의 범위에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도 포함되어 국가대 지역그룹의 동등성 관계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위해분석(risk analysis),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위해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에 관한 정의를 12차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1996. 11. 25~28)에서 개발한 정의를 기초로 정의조항에 추가하게 되어 검사자원이 위해분석과 위해에 근거한 결정이 되어야 함이 명문화되었다.

검사 및 인증제도의 평가를 담당하는 제3차 기관의 범위가 국가에서 승인한 기관으로 규정되었고 관리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하부조문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official inspectors)이 HACCP 적용과 그의 평가분야에서 충분히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강화시켰다. 수입시 적용하는 물리적 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해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본 의제에 대하여 이틀간에 걸쳐 각국가와 EU, 소비자기구등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논의후 말레이시아, 인도, 미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및 국제소비자기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단계로 채택되어 제 22차 총회에서 8단계로 검토될 예정에 있다.

본 문서는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룬 지침으로서 수입식품 관련법, 지침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향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 본 지침서의 각 조문별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규정을 검토하여 본 지침서의 시행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전자문서제도를 통한 수출입 인증 [지침서/정보지](초안)(4단계)(의제 5)

본 문서는 전자문서제도를 통하여 수출 인증서를 전달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제도의 범위와 전자인증서의 지위, 수출용 문서 및 수입관리제도를 위한 시설, 보안장치, 전자문서제도의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제도는 전자화된 수출인증서를 전달하며 문서 인증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진다. 전자문서제도의 기능은 수출업자의 수출에 대한 통고/수출승인/제품인증의 발행/인증서의 검증/문서관리인 확인/인증서의 수령증명서/현장제품에 관한 정보/개별 인증서 인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입수되는 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일 자료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제5차 회의에서 인도는 상기한 의제에 대하여 국가내 관세청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적 자원과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수출입 인증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호주, 캐나다, 인도, 태국의 동의하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문서의 지위에 대한 논의결과 어떤 형태의 문서로든 WTO의 SPS 및 TBT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자문 이후,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작업문서는 호주가 제공하는 정보지로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본의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논의되어야 하고 각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CODEX 당문서를 채택할 경우 WTO의 SPS 및 TBT 협정 적용에 따라 의무가 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각국가의 부담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지며 CODEX의 작업이 WTO의 영향하에 작업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예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물량증가와 통신시설의 발달과 아울러 원활한 교역을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교역 시대에서 수입식품 관리의 전산처리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현재 수입식품 전산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 3. 식품의 검사 및 인증의 공적제도에서 품질보증제도, 특히 ISO 9000 계열 규격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서 (초안)(4단계)(의제 6)

당문서는 품질보증제도, 특히 ISO 9000계

열 규격을 다루고 있으며 회사에서 ISO 8402 규격에서 정한 “품질 권고사항”에 일치한 업무 또는 제품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에게 조직화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지침서에 의하면, 정부기관의 임무는 특정 법적 요구사항에 제품의 적합성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HACCP제도와 별도로 ISO 9000계열규격을 사용하여, 특정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품질관리방안을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5차 회의에서는 본 의제에 대하여 국가간 의견이 달라 프랑스에서 작성한 본 문서는 공식적인 CODEX 문서로서 작업을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작업문서는 프랑스가 제공하는 정보자료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규격 및 기준은 식품의 안전성 중심의 규격 및 기준인 실정에서 이와 같은 품질보증제도는 정부의 정책 마련과 식품산업의 여건 형성 등 시간과 비용과 제반 여건이 수반되어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HACCP제도를 최근 입법화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시작단계이며 품질관리분야 또한 일부 식품업체에서 ISO 9000 규격을 일부 도입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품질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식품과 수입되는 제외국 제품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품질관리에 대한 점차적인 정책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식품산업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협정개발을 위한 지침서(초안)(4 단계)(의제 7)

본 문서는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하여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개시하길 원하는 정부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지침서이다. 세부사항으로는 협정의 목적, 협정 유형,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 개시 전 고려사항, 협정전 토의개시, 동등성 협정을 위한 협의과정, 국가기준 부합인정협정을 위한 협의과정, 비공식적 준비조사, 협정 기간, 협정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문에 작성되어야 할 정보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협정이란 합의(arrangement), 협정(agreement),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s), 양해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 법률(regulations) 및 기타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도를 말한다.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수입 또는 수출제품이 안전하며 규제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동 자원(collective resources)의 더욱 효율적인 사용과 활동(activity)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 조화 작업을 지원하며 무역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 지원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력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협정유형에는 동등성 협정(equivalence agreement)과 국가기준부합인정협정(agreement to meet national requirement)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동등성 협정은 식품 안전성분야와 건전성 및 표시분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데 식품안전성의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리규제가 비록 수입국의 규제와 다르다 할 지라도 건강 보호라는 수입국의 적정 수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또한 건전성 및 표시분야에서는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리규제가 비록 수입국의 규제와 다르다 할 지라도 수입국의 목표와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후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기준부합인정협정이란 수입국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관리제도 및 또는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후에 체결하는 것으로 그 체결 대상에는 규제 대상 제품 및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는 협정체결 전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협정 대상 제

품에 대한 수출국 및 수입국 간에 교역 여부; 양국간의 협정이 교역을 원활화 할 수 있는지, 국민 건강 위해를 고려할 때 어떤 제품의 범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수출국이 적절한 관리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반구조와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수출국의 제품이 수입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적합율이 낮은지 여부 및/또는 협정 개발을 통하여 적합률의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출국이 식품중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을 인정하고 통합할 것인지, 중요한 자원이 협정결과로서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정을 체결할 때 먼저 협정의 유형과 제품의 범위, 각 제품의 관할 당국, 협정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규제사항의 범위(예를 들면, 건강 및 안전성, 품질보증제도, 표시, 소비자 기만 등)를 결정할 수 있다. 그후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과정과 비공식에비조사를 거쳐 협정을 기안하고 적용을 시작한다.

제5차 회의에서는 당문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후 차기 회의에서 3단계로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다. 당문서는 국내 기준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며, APEC, EC, NAFTA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MRA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어류 및 어류제품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에 대하여 양해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를 맺자고 제안함에 따라 사전 작업으로 동등성 확인작업을 위하여 국내 HACCP 제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와같은 제안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동등성 인정, 협정범위, 협의과정, 방문조사, 협정기안 등 향후 여러 작업과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HACCP 제도의 협정체결을 통하여 식품산업체에게 실재적으로

미칠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협정을 체결해야 할 범위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HACCP 관련 국내 식품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산업체의 시설 및 장비의 구축을 지원하며 HACCP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품 검사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및 훈련이 적절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5. 일반적인 공적인증서 서식에 관한 지침 및 기준(의제 9)

제4차 회의에서 CODEX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자는 의견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일반적인 공적인증서 서식에 관한 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토의가 된 것으로 공적인증서의 사용은 이미 국제적으로 1956년에 스웨덴으로부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1960년도에는 ECE 위원회(United National Economic Commission)에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형성하여 규격화된 교역문서의 크기, 양식(UN layout Key)을 개발한 바 있다. 이후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for Europe (ICS)의 지원아래 1963년에 증지규격(standard bill)으로 조화를 이루었고 여러 국가가 점차적으로 채택하여 서신 및 전자문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에서는 상대국가의 식물규정과 부합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식물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협정을 시작하였다.

본 문서는 수출용 일반인증서를 위한 기준으로서 인증서는 여러 목적을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즉 품질 또는 등급, 오염물질과 첨가물 및 수의약품의 잔류기준, 원산지, 건강 및 위생규정, 제품의 생산, 관리, 가공, 수송시 수입국의 권고사항과 위생조건에 부합된다는 인정, 동등성 또는 기타 협정에 의거하

여 동등하다고 사전에 결정된 수출국의 권고 사항 규정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상기한 사항은 CCFICS의 업무분장의 하나로 식품의 수입과 수출시 인증서기준은 국가간 교역을 원활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되며 공적 인증서 기준은 국가간 수출입 교역시에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로는, 일반적인 공적 인증서는 개별 식품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논의 결과, 모든 제품에 통용되는 일반지침의 개발은 의미가 없으므로 타 식품별 분과위원회에게 회부하기로 하였다. 인증서모델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 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중 “별표 2호 서식”의 검사 증명서와 동등한 성격으로, 제안된 서식에서 원산지, 수출입 관리사항 등이 아국의 서식과 다르나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 시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생산처리시설 항목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관리 중심인 국가에서 공정관리, HACCP 등 생산관리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문서가 논의될 타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예의주시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6. 수입식품 관리제도 지침서 (의제 10)

제4차 회의에서 멕시코에서 수입식품 관리제도에 대하여 CODEX 지침서를 개발하자고 제안하여 금번 회의에서 토의하게 된 것으로 제안서의 범위는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원칙과 일관하여 수입 검사제도를 개발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본 문서에 수입식품 관리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방향이 있어야 하며 다른 문서화의 조화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미국의 지원아래 멕시코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제 6차 회

의, '98. 3. 16~20)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7.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의제 11)

새로운 작업으로 국제소비자기구가 제안한 ‘식품의 부적합처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Development of a Data Base on Rejections of Foods)’ 제안서와 뉴질랜드 대표가 제안한 ‘동등성 판단(judgement of equivalence)’ 과정에 관한 문제를 차기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제안한 ‘인증서 작성과 발행(Rules Relating to the Production and Issue of Certificates)’ 규정은 시간제한으로 논의하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998년 3월 16일~20일까지 호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IV. 결 론

제5차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작업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금번 당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의제별 토의동안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

특히 FAO/WHO 합동사무국의 David Byron 씨가 자문한 제 12차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CODEX 권고기준의 지위”에 대하여, CODEX의 모든 권고기준과 강제기준이 SPS 및 TBT협정에서 CODEX 내의 문서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국제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후, “전자문서제도를 통한 수출입 인증(초안)(4단계)”과 “식품의 검사 및 인증에 관한 공적제도에서 품질보증제도, 특히 ISO 9000계열 규격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서(초안)(4단계)”에 대한 작업이 중지되었는데 이것은 WTO하의 SPS 및 TBT 협정 적용에 대한 각 국가간 부담을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표 2. 각 의제별 지위 일람표

의제	과제	단계	향후 조치
4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안)	8	22차 CAC
5	전자문서제도를 통한 수출입 인증(초안)(4단계)	작업중지	—
6	식품의 검사 및 인증의 공적제도에서 품질보증제도, 특히 ISO 9000계열규격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서(초안)(4단계)	작업중지	—
7	일반적인 공적 인증서 서식의 지침서 및 기준	—	22차 CAC
8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원칙중 “or risk of contamination”문구 삭제시행	—	22차 CAC
9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협정 개발을 위한 지침서(초안)	2/3	미국 정부 6차 CCFICS
10	수입식품 관리제도 지침서	2/3	멕시코/미국 6차 CCFICS
11	인증서의 작성 및 발행에 관한 규정	1/2	영국 6차 CCFICS
11	동등성판정	1/2/3	22차 CAC 뉴질랜드 정부 6차 CCFICS
11	부적합처리 식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	국제소비자기구 6차 CCFICS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WTO하의 SPS 및 TBT협정과 연계하여 수출국의 주도적인 의견제시창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분과위원회는 기술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성격을 지닌 분과로서 다수의 대표단이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아국에 불리한 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표명하는 등 입장반영이 필요한 중요한 분과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식품 뿐만아니라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

해 국가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참고문헌

1.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 Ninth edition, 1995.
2. Report of the 21th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ALI-NORM 95/37, 1995.
3. Report of the 4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ALINORM 97/30, 1996.
4. Report of the 5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ALINORM 97/30A, 1997.
  5. Report of the 12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ALINORM 97/33, 1996.
  6.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arrakesh, 15 April 1994.
  7.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arrakesh, 15 April 1994.
  8.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Codex Alimentarius General Requirement Volume 1A; CAC/GL 20-1995.
  9.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Control Emergency Situations, Codex Alimentarius General Requirement Volume 1A; CAC/GL 19-1995.
  10. Guidelines and Criteria for a Generic Official Certificate Format; CX/FICS 97/8.
  11. '97 식품위생교육교재 부록, 한국식품공업협회, 1997.